

[일련번호 : 1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 수입증지 관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증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2(징수방법)에 의하면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하며, 같은 조례 제7조(징수시기)에 따르면 수수료는 각종 증명, 열람 또는 등록,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가 신청되었을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계기의 사용) 제1항에 따르면 인증기로 인영할 때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일자, 계기고유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수입금의 납부) 제3항에 따라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인감 변경 신고 수수료 발생에 따른 수입증지를 인감변경 신고대장에 부착하면서 수입증지의 일부(발행일자)가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결손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하였고, 인감 변경 신청일 다음 날의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등 수입증지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인감 수입증지 관리 부적정(훼손) 내역

연번	증지발행일자	인감변경일	인감변경 신고인	비고
1	20220504	20220503		
2	20220511	20220510		
3	20220524	20220523		
4	20220524	20220523		
5	20220616	20220615		
6	발행일자훼손	20220624		
7	20220801	20220729		
8	발행일자훼손	20221011		
9	발행일자훼손	20221020		
10	발행일자훼손	20221027		
11	발행일자훼손	20221201		
12	발행일자훼손	20221206		
13	20230613	20230612		
14	발행일자훼손	20230109		
15	발행일자훼손	20230201		
16	발행일자훼손	20230206		
17	발행일자훼손	20230216		
18	발행일자훼손	20230322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인감 수입증지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